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**2022년 6월 23일(목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2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2. 6. 22.(수) | 담당부서 | 해외투자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안성호 과장(044-203-4090) | 담 당 자 | 박주형 사무관(044-203-4069) |

# 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

## -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이창양)는 **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해외진출기업복귀법')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(안)**을 **6월 22일부터 입법예고**한다고 밝힘 (입법예고 기간 : '22.6.22일(수)~8.1일(월))

○ 이번 개정안은 **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**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**새정부 110대 국정과제,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**('22.6.15), **새정부 경제정책방향**('22.6.16)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**후속조치**임

○ 또한, 시행령 개정을 통한 **유턴범위 확대**는 **국내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**하는 **기업들이 제기**한 **건의사항을 적극 수용**하기 위한 것임

□ 이번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은 **기존에 보유**하고 있는 **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**에 **설비를 신규·추가 도입**하는 경우에도 **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**받을 수 있음

○ **현행**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**① 해외사업장 청산·축소**(25% 이상) 및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**국내사업장의 신·증설이 필수적임**

○ 이번 개정은 **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**이 **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**라는 점을 고려하여, **국내사업장 신·증설**의 **범위**를 **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**하는 경우까지 **넓힌 것임**

**< 시행령 개정 전·후 '국내사업장의 신·증설' 개념 비교 >**

| | |
|---|---|
| **현 행** | ① 공장의 신설<br>② 공장의 증설<br>③ 기존(타인 소유) 공장을 매입·임차후 제조시설 설치 |
| **개정안** | ①, ②, ③에 '④ 기존(자가)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' 추가 |

○ 이번 **개정안이 확정되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**의 경우,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**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보조금, 법인세 등 세제감면,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**을 받을 수 있음

□ 산업부는 **입법예고, 관계부처 협의** 등을 거쳐 **개정안을 최종 확정**하고, **금년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**할 계획임

□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**국민참여입법센터**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**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**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

【붙 임】: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박주형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 **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문**

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-500호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2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2022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,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“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의 정의”를 확대

## 2. 주요내용

① ‘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·증설로 인정 (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)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
- 전자우편 : digimon516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13

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(전화 (044) 203 - 4069, 팩스 (044)203-471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통령령 제 호

#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(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선정부터 적용한다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3조(사업장의 신설·증설 등) | 제3조(사업장의 신설·증설 등) |
|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. | ① ----------. |
| 1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| 1. ---------- |
| 가. ~ 다. (생 략) 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라.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(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 |
| 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| ②·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